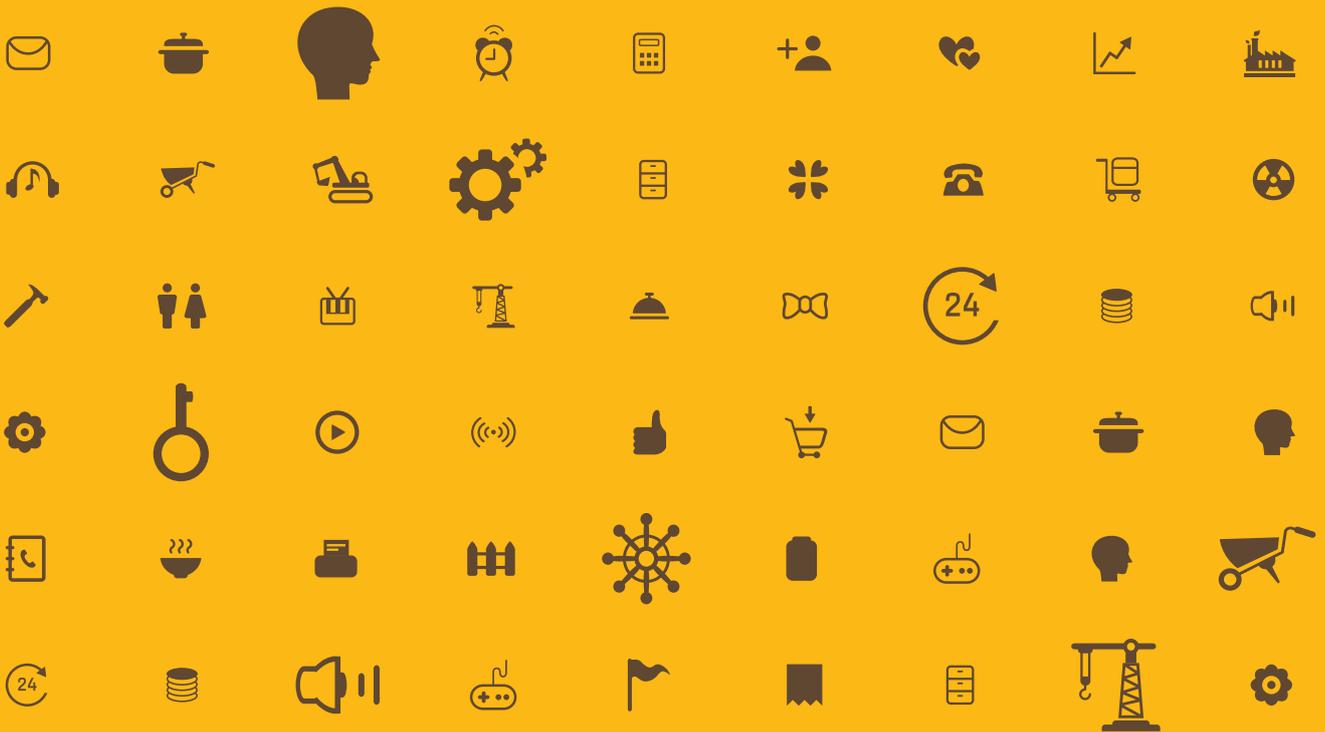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을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2016. 6.



최저임금위원회

본 연구결과는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에 의한 것임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2016. 5

연구자 : 우종원 교수(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제 출 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우 종 원 교수

주요 내용

◇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사례조사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 사례조사 기간 및 연구자: '16.3~5월,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우종원 교수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의 정의 및 의미

① 미만을

- (정의) 최저임금을 개정하기 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의미) 미만이 높을수록,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② 영향률

- (정의) 최저임금을 개정한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의미)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의 개정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

< (참고)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

○ 설정단위: 지역별, 산업별

○ 심의과정

1) 「중앙최저임금심의회(기준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관련 기준” 제시

- 전 도도부현을 A, B, C, D의 4랭크로 구분해 랭크별 기준액을 설정

* 랭크: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에 있는 도도부현을 그룹으로 묶은 것임

2)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인상폭 심의하고 이에 의거 최저임금액 결정

⇒ 제시되는 “기준”액은 참고사항일뿐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심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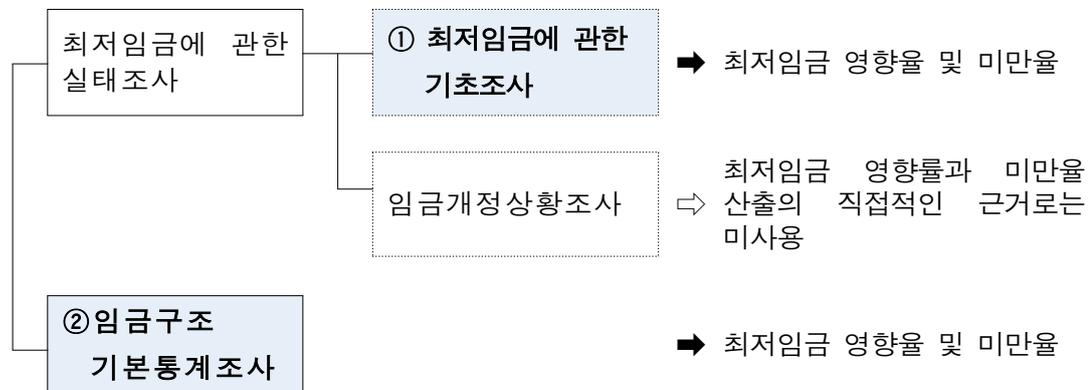
- 산업별 최저임금(이는 ‘특정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림)은 기본적으로 매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함

②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산출 및 활용

가. 산출개요

- ◇ (산출근거)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해 산출되며, ②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의해서도 산출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한 방법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방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대화하기 위한 참조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 (참고자료) 미만을 및 영향률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③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가 참고자료로 제시됨

< (참고)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

- (목적)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의 결정 및 개정 등의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 파악
- (연혁) 1981년 조사개시 이후 1997년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로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개정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임금개정상황조사」 추가 후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로 변경
- (조사방법)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에서 매년 6월 1일 실시하며, 2009년 이전에는 직원이 조사하였고 2010년 이후 우송조사로 변경

◇ (활용)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활용

* 기준 소위원회: 지방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

-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랭크별 자료 제시

* 랭크: 전 도도부현(都道府県)을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 도도부현(都道府県)을 유사한 수준별로 구분A, B, C, D의 4랭크로 구분

< 최저임금 심의 시 제공 자료별 비교('15년 기준) >

		제공자료	산출근거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 (’15)	제 1회 (7.1)	전국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5~'14) ⇒ <도표1>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전국평균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8~'14) ⇒ <도표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2회 (7.15)	지역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5~'14) ⇒ <도표3>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 지도 결과에서 들어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의 비율 ⇒ <도표4>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3회 (7.22)	2014년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특별집계 결과) ⇒ <도표5>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도표1>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5-201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별 최저임금(엔)	668	673	687	703	713	730	737	749	764	780
미만율(%)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會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도표2>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8-2014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만율(%)	1.1	1.5	1.5	1.8	1.8	2.0	1.9
영향율(%)	1.8	1.9	2.6	2.5	2.8	3.6	3.6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會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도표3> 일본의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5-201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668 (3)	673 (5)	687 (14)	703 (16)	713 (10)	730 (17)	737 (7)	749 (12)	764 (15)	780 (16)
A 랭크	미만율 (%)	0.8	1.0	0.7	0.6	1.1	1.6	1.5	2.5	2.1	2.5
	영향율 (%)	1.0	1.2	1.8	1.9	3.1	4.4	4.0	5.7	10.7	9.3
B 랭크	미만율 (%)	1.1	1.0	1.2	1.3	1.4	1.7	1.7	1.4	1.5	1.6
	영향율 (%)	1.3	1.3	1.9	2.8	1.9	3.2	2.9	3.1	5.4	5.2
C 랭크	미만율 (%)	1.9	1.3	1.3	1.6	2.3	1.4	1.8	2.2	2.0	1.8
	영향율 (%)	2.2	1.7	2.6	3.2	3.1	4.3	3.1	5.2	5.5	6.6
D 랭크	미만율 (%)	2.1	2.1	1.4	1.8	2.0	1.5	2.0	2.0	1.8	1.8
	영향율 (%)	2.4	2.5	3.1	3.7	2.4	4.6	3.4	5.0	6.0	6.2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會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15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 (平成17年度~平成26年度)

<도표4>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의 비율” 추이(2006-2015년)

년	감독실시 사업장의 근로자수(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의 비율(%)
2006	149,523	2,376	1.6
2007	299,402	4,241	1.4
2008	310,782	4,081	1.3
2009	150,126	3,393	2.3
2010	192,080	3,482	1.8
2011	201,362	5,275	2.6
2012	185,260	4,056	2.2
2013	190,386	4,079	2.1
2014	182,548	5,716	3.1
2015	161,377	5,262	3.3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會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15日.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kujunkyoku-Roudoujokenseisakuka/000051328.pdf>).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 平成17年度~平成26年度

<도표 5> 일본의 2014년도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률(“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	201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780 (16)	780 (16)
A랭크	미만율(%)	2.5	2.1
	영향율(%)	9.3	4.0
B랭크	미만율(%)	1.6	1.5
	영향율(%)	5.2	2.8
C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6	3.7
D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2	3.5
계	미만율(%)	2.0	1.9
	영향율(%)	7.3	3.6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會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 2015年7月22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2199.html>).
본래는,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나. 산출근거별 주요내용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1981년부터 조사)

1) 조사목적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조사대상

-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 대상산업* 및 규모: 기본적으로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이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중 신문업과 출판업은 상용노동자 100인 미만임

* (A)제조업, (B)정보통신업 중 신문업, 출판업, (C)도매업, 소매업, (D)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E)숙박업, 음식서비스업, (F)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G)의료, 복지, (H)서비스업

3) 조사예산

- 기본적으로 1년당 약 3천만엔이며, 예산의 대부분은 업무위탁비임
- * 위탁사항: 조사표 및 조사요령의 인쇄, 조사대상 사업소에의 발송, 조사표 기입 후 노동국까지의 반송, 조사표의 에러체크, 조사표 기재사항의 전자 데이터화, 조사표의 집계
- * 위탁방법: 일반경쟁입찰

4) 조사주기, 기간 및 체계

- (조사기준 시점) 조사 실시년도의 6월 1일
- * 일본의 경우 춘투 등을 통해 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매년 5월 상순~7월 중순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 → 민간사업자 → 도도부현 → 보고자(사업소)

5) 표본추출 및 선정

- (추출) 모집단('14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은 사업소 390만개, 노동자 1,920만명이며, '15년 조사 시에는 10만개 사업소 추출
- (선정) 산업별 사업소 추출개수는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따르나, 추출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은 도도부현에 맡김
- * 2015년 약 10만 사업소 조사표 발송, 이 중 집계대상이 된 사업소는 약 5.4만 사업소의 약 55만명의 노동자임

6) 조사사항 및 조사표 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3. 노동조합의 유무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당해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 8. 당해년 6월분의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수당 (각 추정액) 9.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 당해년 6월분의 1일 소정노동시간수

* 조사표: <부표2> 참조

- (조사표 작성) “노동자에 관한 사항” 기입 시 종업원 규모별 정해진 비율대로 기입대상 노동자를 추출하여 추출된 근로자에 대해 작성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종업원 규모별 추출율 >

규모	29인 미만	30~99인
산업	1/1(전수)	1/2(추출)
전 산업	1/1(전수)	1/2(추출)

* 추출 시 특정 직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요구

7)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을 산출방법

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금액 (추정액)에 “당해년 6월분의 기타 수당 (추정액)”을 더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액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 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②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영향율은 회수한 표본을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수치에 의거해 산출 - 각 도도부현은자신이 추출한 표본을 상기 규정된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을 및 영향율을 산출



③ 미만을, 영향율의 산식
<p>1) 각 도도부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p>2)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p>3) 전국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영향율=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②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1948년부터 조사)

1) 조사목적

- 주요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년수별 임금실태 파악

2) 조사대상

-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 대상산업 및 규모: 산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6대 산업*의 5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민영사업소 및 10인 이상의 사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용사업소

*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우편업, 도매업·소매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물품대여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오락업(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교육·학습지원업, 의료·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그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단, 외국공무를 제외)

3) 조사주기, 기간 및 체계

- (조사기준 시점) 조사 실시년의 6월
-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매년 7.1~7.31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 도도부현 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 → 통계조사원 → 보고자(사업소)

4) 표본추출

- 모집단은 사업소 132만개, 노동자 4,012만명이며, '14년 조사에서는 사업소 7.8만개 와 노동자 170만명 추출

* 사업소 추출률은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 규모별로 설정

5) 조사사항 및 조사표 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주요한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3. 사업소의 고용형태별 노동자수 4. 기업전체의 상용노동자수 5. 신규학졸자의 초임금액 및 채용 인원 (단 민영사업소에 한함)	1. 노동자의 번호 혹은 성명 2. 성(性) 3. 고용형태 4. 취업형태(단 상용노동자에 한함) 5. 최종학력 6. 연령 7. 근속년수 8. 노동자의 종류(단 제조업 등의 상용 1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9. 직위(단 상용 10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10. 직종 11. 경험년수 12. <u>실노동일수</u> 13. <u>소정내 실노동시간수</u> 14. <u>초과 실노동시간수</u> 15. <u>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급여액</u> 16. <u>초과노동급여액</u> 17. <u>통근수당및정개근수당과 가족수당</u>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18. 조사전년 1년간의 상여금 및 기말수당등의 특별급여액

* 조사표: <부표3,4> 참조

- (조사표 작성) “노동자에 관한 사항” 기입 시 상용노동자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사업소인 경우에 산업 및 규모별로 설정, 10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규모별로 설정

< 상용노동자의 추출율(499인 이하 규모인 경우) >

규모	100-499인	30-99인	10-29인	5-9인
산업				
전산업(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을 제외)	1/5	1/2	1/1 (전수)	1/1 (전수)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1/4	1/2	1/1 (전수)	1/1 (전수)

< 임시노동자의 추출율 >

규모	10인 이상	5~9인
산업		
전산업	1/2	1/1 (전수)

6)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산출방법

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관한 조사표 개인표”에 기입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중에서 다음의 제수당액, 즉, 초과노동급여액,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모두 제외한 금액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노동시간 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② 미만을, 영향률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즉 복원배율은 추출율의 역수임, 본래의 추출율 및 복원배율을 그대로 사용함



③ 미만을, 영향률의 산식
<p>1) 각 도도부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률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p>2)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률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p>3) 전국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만을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 영향률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전국계}

③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1) 개요

- (목적)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최저임금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혹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주안점을 둔 감독지도 결과”를 통계자료로 작성
-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결과라기보다는 매년 노동국이 작성하는 “감독년보(年報) 중의 해당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실시 및 집계 방법

- (실시)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산하 노동기준감독서(署)는 매년 연간감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노동감독을 실시
- (대상 및 집계) 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곳이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곳을 중점적인 타겟으로 설정해 노동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작성하여 보고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지도 결과를 취합해 후생노동성이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

3) 의미 및 한계

- (의미) 도도부현 노동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한 의미를 넘지 못함
- (한계) 도도부현 노동국이 타겟으로 설정하는 산업이나 규모가 다르고, 각 도도부현에 따라 노동감독의 강도나 실효성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지도 결과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다.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을 및 영향률의 상이(相異)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VS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 미만율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영향률은 상당한 차이 발생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표본의 성격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원인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주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를 다수 포함

②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VS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 미만율이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결과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무작위조사임에 반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작위적인 조사이기 때문임
- * 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이나 사업소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소를 타겟으로 실시
-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임
-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최저임금 결정 2개월 정도가 지난 보통 12월경에 실시
-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휘된 다음해의 6월이며, 일반적으로 기업 단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임

③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을 산출과제 및 시사점

가. 미만을과 영향을 측정을 둘러싼 과제

①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수가 다수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업종별 미만을과 영향을 데이터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출되지만 샘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이 과연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

* 예) 사이타마('15년): 3,500개 사업체 추출 후 조사표 우송 → 1,300개 조사표 회수

- 통계는 다른 성청(총무성 통계국)의 소관이며, 통계변경 절차도 간단치 않고, 표본 수를 늘이는 경우 예산관련 조치가 필요하여 문제해결이 간단하지는 않음

② 조사 및 분석시간의 확보

▶ 조사실시시간과 분석시간이 매우 빠듯하여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심의일정) '춘투' 등을 감안하여 6월 1일 임금개정상황을 전제로 7월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랭크별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각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서 10월까지 최저임금액을 심의해 공표해야 함

- (문제점-분석측면) 6월 조사 실시 후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달 정도에 분석까지 끝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임

- (문제점-조사측면) 5월에 조사표를 배부해 6월1일의 예상아래 해당사항을 기입해주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③ 적절한 복원률의 확립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인 경우 복원률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존재

- 표본의 추출률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나, 당초 설정된 추출률에 따라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는 실정임

④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① 조사통계의 정확성 확보

- ▶ 일본의 경우 조사응답 시 사업주가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에 의거하는 미만율과 영향률의 측정은 노동자가 기입하는 경우 인식상의 편차 등을 줄이고, 통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② 적정 수의 표본 확보

- ▶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종별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나 샘플 수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표본 수를 늘이는 외에 임금개정상황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 회수된 당해 업종의 (30인 미만 혹은 100인 미만 사업소) 조사표를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표본으로 전용하는 방법 검토

③ 현상분석 및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최저임금 설정 외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조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샘플 수가 적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에 한계가 존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조사사항과 샘플 수가 많아 저임금 근로자의 속성 파악에 유리하나 5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하고 있어 저임금근로자 망라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표본 수는 적더라도 영세사업소를 포함해서 일정한 표본 수를 확보한 위에 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과 관련정책 수립에 효과적일 수 있음



목차

C O N T E N T S

1. 미만을 및 영향율의 개요	1
2. 전국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10
가.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2015년도의 경우)	10
나.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11
다.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입각한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	19
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21
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입각한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	30
바.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에 의한 미만의 산출	31
3. 지방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사이타마현의 사례	34
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34
나. 지방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36

4.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을 및 영향율의 상이 ... 44

- 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상이44
- 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상이48

5. 미만을 및 영향율 측정을 둘러싼 과제 및 시사점 49

- 가. 미만을 및 영향율 측정을 둘러싼 과제49
- 나. 일본의 미만을 및 영향율 측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51

[참고문헌] 54

[부표] 55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우종원 (사이타마 대학)

1. 미만율 및 영향율의 개요

□ 최저임금의 효과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만율 및 영향율을 측정할 필요

○ 미만율

-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개정하기 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미만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 영향율

- 영향율은, 최저임금을 개정한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영향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의 개정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

□ 미만율 및 영향율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

- 일본 최저임금의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해서는 吉村臨兵(2010), 神吉知郁子(2011), 우종원(2012), 労働調査会出版局編(2016a), 労働調査会出版 局編(2016b)를 참조.
- 일본 최저임금의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川口大司·森悠子(2009), 大橋勇雄 (2009), 大竹文雄(2013), 玉田桂子·森知晴(2013)를 참조.
- 미만율, 영향율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서는 연구성과가 많지 않으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함¹⁾.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 pp 48-50.

- 지역별 최저임금액과 평균임금액의 괴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최저임금액 주변에 저임금노동자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전제 아래, “지역별최저임금미만을”, “지역별최저임금액×1.05 미만의 비율” “지역별최저임금액×1.10 미만의 비율” “지역별최저임금액×1.15 미만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최저임금액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함.
 - 계산 결과, ‘일반노동자’의 경우는 지역별 최저임금 주변에 많은 수가 모여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파트타임노동자’의 경우는 지역별 최저임금 주변에 노동자가 다수 분포하는 상황이 확인됨.
- 미만을, 영향을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 安部由起子·田中藍子 (2007)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²⁾.
- 1990년대를 통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된 결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지역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었음.
 - 이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파트타임노동자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유력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임.
- 미만을, 영향을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있음³⁾.
- 전체적으로 보아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파트타임노동자임.
 - 파트타임노동자 중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작지 않음. 대도시권보다는 홋카이도, 아오모리, 아키타, 와카야마, 야마구치,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등 변두리 지역에서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이 드러남.
 - 주로 ‘지역별 랭크D 지역’ 혹은 ‘지역별 랭크C 지역’의 일부—‘지역별 랭크’에 관해서는 후술—에서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 바. 이들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의 임금수준 상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2) 安部由起子·田中藍子(2007), p89.

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9), pp75-76.

□ 일본에서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정책적인 활용⁴⁾

○ <참고>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설정됨.
-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구체적으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目安)에 관한 소위원회” (이하, ‘기준 소위원회’로 약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에 관련된 ‘기준(目安)’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로 매년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인상폭을 심의하고, 이에 의거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함. 제시되는 ‘기준’액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심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발휘함.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기준’을 제시할 때는, 전(全) 도도부현을 A, B, C, D의 4랭크로 구분해, 랭크 별로 기준액을 설정함. A, B, C, D의 4랭크는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수준에 있는 도도부현을 그룹으로 묶은 것임,
- 한편 산업별 최저임금 (이는 ‘특정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림)은 기본적으로 매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함.

○ 미만을 및 영향율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의 심의 시, GDP 및 유효구인배율 등과 함께 “주요 통계자료”의 하나로 사용됨.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먼저 전국 평균의 미만을, 영향율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표로 제시됨.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후술 <도표 1>).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을 및 영향율” (후술 <도표 2>).

○ 다음으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율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표로 제시됨.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 (랭크 별)의 추이” (후술 <도표 3>).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을 및 영향율” (후술 <도표 4>).

4) 이 부분은,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1日(<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15日(<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및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 2015年7月22日(<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2199.html>)를 참조.

□ 일본에서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⁵⁾

- 근래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를 전국 평균으로 보면 <도표 1>과 같음.
 - 이 표는 후술하는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에 의한 것임.
 - 10년에 걸쳐 미만이 일정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완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영향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임.
 - 이에 따라 미만율도 점차 높아져 2% 전후를 오가는 추세임. 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연도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만율이 2%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함.

<도표 1>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2005-2014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엔)	668	673	687	703	713	730	737	749	764	780
미만율 (%)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2015年7月 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 전국 평균의 미만을 및 영향율을 다른 지표로 본 것이 <도표 2>임.
 - 이 표는 후술하는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에 의한 것임.
 - 미만을 및 영향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술한 <도표 1>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치 자체, 특히 영향율의 수치는 <도표 1>과 상당히 다름.

5) 주 4와 같음.

- 이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의 상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짐. 즉, <도표 1>이 의거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소규모 30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0인 미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반면, <도표 2>가 의거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소규모가 5인 이상인 민영사업소 및 10인 이상인 공영사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함.
- 두 조사간의 상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검토함.

<도표 2>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2008-2014년)

(단위: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미만율	1.1	1.5	1.5	1.8	1.8	2.0	1.9
영향율	1.8	1.9	2.6	2.5	2.8	3.6	3.6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 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 근래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를 지역 랭크별로 보면 <도표 3>과 같음.

- 2000년대의 경우, 수도권 등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A랭크”가,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두리 지역인 “D랭크”보다, 미만율에 있어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2006년도에 “A랭크”의 미만율은1.0%, “D랭크”의 미만율은 2.1%임.
- 이는 “D랭크” 등 변두리 지역엔 중소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을 밀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 하지만, 최근 들어 “A랭크”의 미만율이 급증해 “D랭크”의 미만율을 웃도는 현상이 생기고 있음. 실제 2014년도의 “A랭크”의 미만율은2.5%, “D랭크”의 미만율은 1.8%임.
- 이는 근래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업소가 대도시권에서도 많아진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도표 3> 일본의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2005-2014년)

(단위: 엔, %)

		2005년 도	2006년 도	2007년 도	2008년 도	2009년 도	2010년 도	2011년 도	2012년 도	2013년 도	2014년 도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668 (3)	673 (5)	687 (14)	703 (16)	713 (10)	730 (17)	737 (7)	749 (12)	764 (15)	780 (16)
A 랭크	미만을	0.8	1.0	0.7	0.6	1.1	1.6	1.5	2.5	2.1	2.5
	영향율	1.0	1.2	1.8	1.9	3.1	4.4	4.0	5.7	10.7	9.3
B 랭크	미만을	1.1	1.0	1.2	1.3	1.4	1.7	1.7	1.4	1.5	1.6
	영향율	1.3	1.3	1.9	2.8	1.9	3.2	2.9	3.1	5.4	5.2
C 랭크	미만을	1.9	1.3	1.3	1.6	2.3	1.4	1.8	2.2	2.0	1.8
	영향율	2.2	1.7	2.6	3.2	3.1	4.3	3.1	5.2	5.5	6.6
D 랭크	미만을	2.1	2.1	1.4	1.8	2.0	1.5	2.0	2.0	1.8	1.8
	영향율	2.4	2.5	3.1	3.7	2.4	4.6	3.4	5.0	6.0	6.2
계	미만을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 15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 (平成17年度~平成26年度) .

○ 한편 2014년도의 지역 랭크별 미만을 및 영향율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결과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거한 결과를 비교하면, <도표 4>와 같음.

- 전국 평균 뿐만 아니라 지역 랭크별에 있어서도 미만을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영향율의 수치에서 큰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이유에 관해서는 추후 분석함.

<도표 4> 일본의 2014년도의 지역 랭크별 미만을 및 영향율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	201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780 (16)	780 (16)
A랭크	미만을	2.5	2.1
	영향율	9.3	4.0
B랭크	미만을	1.6	1.5
	영향율	5.2	2.8
C랭크	미만을	1.8	1.9
	영향율	6.6	3.7
D랭크	미만을	1.8	1.9
	영향율	6.2	3.5
계	미만을	2.0	1.9
	영향율	7.3	3.6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 2015年7月 22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2199.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 이 글의 과제와 방법

- 이 글의 과제는 일본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미만을 및 영향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 글은 기존의 문헌, 자료 및 후생노동성과 사이타마노동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외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기록에 의거함. 주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음).

6)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츠찌야 나오키(土屋直樹) 씨, 타게모토 타카시(竹本隆) 씨, 그리고 노나카 노부타카(野中信孝) 씨께 마음으로부터 사의를 표한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회장 다타 미치오(仁田道夫) 씨는 귀중한 조언과 함께 후생노동성에 연락을 취해 주셨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오학수 씨와 호리 하루히코(堀春彦) 씨도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셨다. 여기에 적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물론, 이 글의 내용과 관계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 2016년4월13일 14:30~16:00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공익위원 (무사시대학 교수) 츠찌야 나오키(土屋直樹) 씨.
- 2016년4월21일 10:00~12:00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 최저임금계장 타게모토 타카시(竹本隆) 씨.
- 2016년4월27일 09:30~11:00 사이타마노동국 노동기준부 임금실 실장 노나카 노부타카(野中信孝) 씨.

□ 이 글의 서술 순서

○ 이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함. 먼저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 일본은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앙 및 지방의 중층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및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중앙 차원 및 지방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함. 다만, 미만을 및 영향율 측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조사는 중앙 차원의 조사설계에 의거하기 때문에 서술의 기본은 중앙 차원에 두어짐.

- 중앙 차원 및 지방 차원의 각각의 기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름.

- 우선 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제시되는지를 검토함. 이를 통해 미만을 및 영향율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미만을 및 영향율 산출에 있어 어떤 통계에 의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미만을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해 산출됨. 따라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미만을 및 영향율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거해서도 산출됨.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을 및 영향율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대화하기 위한 참조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따라서 이를 두 번째로 검토함.

미만을 및 영향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소가 어느 정도 있고,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가 참고자료로 제시됨. 따라서 이를 마지막으로 검토함.

○ 다음으로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을 및 영향율의 상이에 대해 검토함.

- 상기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을 및 영향율은 두 조사간에 차이가 있음.

-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율과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 따른 미만율⁷⁾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
 - 각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관해 검토함.
- 마지막으로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상의 과제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함.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함.
 -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고찰함.

7)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의 경우, 정식으로는 ‘미만율’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미만율’이라 부르기로 함.

2. 전국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가.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2015 년도의 경우)⁸⁾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참고로 하는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주요통계자료(1)— 전국통계자료

- “주요지표의 추이”
-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 “임금 및 노동시간의 추이”
- “춘투 임금인상 타결 상황”
- “하기 상여금/일시금 타결 상황”
-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전년비 상승율의 추이”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을 및 영향율”
- “지역별 최저임금과 임금수준과의 관계”
- “기업의 업황판단 및 수익”
- “법인기업통계로 보는 노동생산성의 추이”

○ 주요통계자료(2)—도도부현(都道府県)통계자료

- “각종관련지표 (1인당 현민소득, 표준생계바, 고졸초임금)”
-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 “실업률의 추이”
- “임금 및 노동시간의 실정과 추이”
- “소비자물가지수등의 추이”

○ 주요통계자료(3)—업무통계자료

-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보다 구체적으로는,
 - ① 전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의 심의 결정 상황
 - ② 기준과 개정액과의 관계의 추이 (도도부현별)
 - ③ 효력발생년월일의 추이

8) 주 4와 같음.

- ④ 가중평균액과 인상율의 추이 (전국 및 지역 랭크별)
- ⑤ (최저임금의 도도부현별) 최고액과 최저액 및 격차의 추이
- ⑥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율의 추이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 (후술 <도표 12>)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상기 통계 외에 배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자료1: “2015년 임금개정상황조사 결과” (후술)
- 자료2: “생활보호와 최저임금”
- 자료3: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을, 및 영향율 (랭크별) 추이” (2005년 ~ 2014년) (전계 <도표 3>)
- 자료4: “임금분포에 관한 자료 (도도부현별, 종합지수순)”, 구체적으로는,
 - “시간당 임금분포 (일반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 계)”
 - “시간당 임금분포 (일반노동자)”
 - “시간당 임금분포 (단시간노동자)”
- 자료5: “최신 경제지표의 동향”, 구체적으로는,
 - ‘경제성장’, ‘생산’, ‘제3차 경제활동’, ‘기업수익’, ‘기업도산’, ‘상업판매’, ‘개인소비’, ‘업황판단’, ‘업황판단 (중소기업)’, ‘임금’, ‘노동시간’, ‘명목경제성장율의 동향’, ‘경제전망 (내각부 연 중앙 시산)’, ‘경제전망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대세 전망)’, ‘소비자물가의 전망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각의결정)’, ‘소비자물가의 전망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대세 전망)’.
- 자료6: “동일본 대지진 관계 자료”
- 참고자료: “지역별 최저임금과 임금수준과의 관계 (취업형태별)”, “춘투 임금인상 타결 상황”, “하기 상여금/일시금 타결 상황” 등.

나.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 미만을 및 영향율 측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집계 결과에 의거함.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공통사항)의 개요⁹⁾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아래에서 ‘최저임금실태조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음)는 기본적으로 “임금개정상황조사”(賃金改定状況調査) 및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로 구성됨.
- 조사의 목적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개정 심의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의 근거법령
 - 통계법에 기초한 일반통계조사.
- 조사의 연혁
 - 1981년에 조사 개시, 이후 1997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
 - 1998년부터 소규모사업소 노동자의 임금개정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임금개정상황조사표”를 추가하고 조사의 명칭도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로 변경.
- 실시부서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
- 조사시기
 - 기본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 조사방법
 - 이전에는 직원조사.
 - 2010년부터 우송조사로 변경 (다만 “임금개정상황조사표”의 경우 샘플 수가 적은 일부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원조사를 여전히 실시).
 - 구체적으로는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이 조사대상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우편으로 수집함.

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http://www.mhlw.go.jp/toukei/list/97-1.html>),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의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http://www.jil.go.jp/kokunai/statistics/shozai/html/s01.html> 및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承認)詳細」<http://www.jil.go.jp/kokunai/statistics/shozai/a/a10-46s.html>)를 참조.

○ 조사표 기입방식

- 자계식.

○ 조사결과의 공표

- 기본적으로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표.
- 인터넷 상으로는 “임금개정상황조사표”의 집계 결과를 부분적으로 공표. 현재 다섯 종류의 표가 공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임금개정실시상황별 사업소 비율”, “사업소의 평균 임금개정률”, “사업소의 임금인상을 분포 특성치”,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상승률 (남여별 내역)”,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상승률 (일반/파트별 내역)”¹⁰⁾.
- 인쇄물의 경우, “임금개정상황조사” 결과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종료후 (대개 7월 하순경) 심의자료의 일부로서 공표함.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는 각 도도부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 종료후 (대개는 10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공표함.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임금개정상황조사”

○ 조사의 목적

- 상기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의 일환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¹¹⁾

- 조사 범위는 전국.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청 소재지 및 도도부현별로 선정한 인구 5만명 미만의 하나 혹은 복수의 도시 (지방소도시).
- 조사 단위는 사업소.
-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산업에 속해 있는 민영사업소 중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소. (A)제조업,

10) 2014년도 조사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26987>)

11) 이하 조사대상을 포함한 2015년의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관해서는,
厚生労働省 「平成27年賃金改定状況調査結果」를 참조.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91653.pdf>)

(B)도매업, 소매업, (C)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D)숙박업, 음식서비스업, (E)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F)의료, 복지, (G)서비스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경우는 상기 산업 전부, 지방소도시의 경우는 제조업만 조사.
- 샘플 추출 방법은 무작위추출.
- 샘플 추출은 이전에는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 2015년까지는 “헤이세이 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2016년부터는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헤이세이26년은 서력 2014년임-필자)에 의거함.
- 객체수는 약 10,000 / 3,90,000.

○ 조사방법

-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경우는 상기 산업 전부, 지방소도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한해, 당해 사업소에 조사표를 송부.
- 2015년 현재, 조사표를 회수해 집계하는 대상 사업소는 도도부현청 소재지 약 3,000사업소, 지방소도시 약 1,000 사업소, 계 약 4,000 사업소임. 집계 대상 노동자는 이들 사업소에 고용된 노동자 약 31,000명임.
- 조사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실시년의 6월 1일 현재로 함 (단, 노동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사사항에 관해서는 조사실시 전년의 6월 1일 현재).
- 조사 계통은 “후생노동성노동조건국-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서- (사업소등) 보고서”임.
- 조사 주기는 매년.
- 조사 실시 기일은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까지.

○ 조사사항

- 크게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나뉨.
- 사업소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임시와 파트노동자를 포함), 3. 노동조합의 유무, 4. 사업소의 월간 소정노동일수, 5. 사업소의 통상노동일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6. 사업소의 전전년도의 연간 소정노동일수, 7. 사업소의 전년도의 연간 소정노동일수, 8. 임금개정상황 (당해년의 1월에서 6월까지).
-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전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전년 6월분의 기본금액, 8. 전년 6월분의 제수당, 9. 전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 전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11.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 12. 당해년 6월분의 제수당 (추정액), 13. 당해년 6월분의 제수당 중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 (각 추정액), 14.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5. 당해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 * 참고로 임금개정상황조사의 조사표를 <부표 1>에 게재함.

○ 이상의 조사 결과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심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되어 제공됨¹²⁾.

- “제1표 임금개정 실시상황별 사업소 비율”
- “제2표 사업소의 평균임금개정율”
- “제3표 사업소 임금인상을 분포 특성치”
- “제4표①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남여별 내역)”
- “제4표②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일반/파트별 내역)”
- “참고1 임금인상 실시시기별 사업소 수 비율
- “참고2 사유별 임금개정 미실시 사업소 비율”
- “참고3 사업소의 평균임금개정율 (현청소재지/지방소도시별)”
- “참고4 사업소 임금인상을 분포 특성치 (현청소재지/지방소도시별)”
- “참고5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현청소재지/ 지방소도시별)”
- “부표 노동자구성 비율 및 연간소정 노동일수”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¹³⁾

○ 조사의 목적

-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의 일환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전술한 것처럼,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에서 지역 랭크별로 기준액을 정해 이를 제시하면,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이를 참조 기준으로 해 도도부현별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게 됨. 관계자에 의하면, 이 때 기준 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액에 예를 들어 1엔을 더해

12) 厚生労働省 「平成27年賃金改定状況調査結果」를 참조.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091653.pdf>)

13)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최저임금을 설정했을 때, 그 결과로 어느 정도의 저임금노동자가 혜택을 받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추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함.

○ 조사대상

- 조사 범위는 전국, 조사 단위는 사업소.
-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산업에 속해 있는 민영사업소 중, 하기 (A) 및 (B) 산업에 있어서는 상용노동자 100인 미만을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그밖의 산업에 있어서는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A)제조업, (B)정보통신업 중 신문업, 출판업, (C)도매업, 소매업, (D)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E)숙박업, 음식서비스업, (F)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G)의료, 복지, (H)서비스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제조업 및 신문업, 출판업에서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함임 (이에 관해서는 후술).
- 샘플 추출은 이전에는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 2015년까지는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2016년부터는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헤이세이26년은 서력 2014년임-필자)에 의거함.

○ 조사방법

- 샘플 추출 방법은 무작위추출.
- 객체수는 종래는 약 100,000/2,83,000, 현재는 약 100,000/3,90,000.
-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전체로 볼 때 사업소 수 390만, 노동자 수 1,920만명임.
- 2015년의 경우, 이 중 10만 사업소를 추출.
- 산업별로 몇 개의 사업소를 추출할지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정해 시달하는 지침에 따름. (이 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단, 추출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은 도도부현에 맡기고 있음. 관계자에 의하면, 샘플의 추출 대상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며, 조사대상의 추출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또 추출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고 함.
- 2015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이를 모집단으로 해 각 도도부현이 최저임금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적절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임.

- * 참고로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결과의 도도부현별 리스트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홋카이도의 제조업에 관한 내역을 <부표 5>에 게재함.
- 하기 조사사항 중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가 <도표 5>와 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기입 대상 노동자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음. 즉 3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는 전 노동자를 기입하되,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소에 있어서는 전 노동자의 2분의 1을 추출해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추출에 있어서는 특정 직종 등에 경사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됨.
- 2015년의 경우, 약 10만 사업소에 조사표를 발송, 이 중 집계 대상이 된 사업소는 약 5만 4천 사업소의 약 55만명의 노동자임.
- 조사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실시년의 6월 1일 현재로 함. 일본의 경우 춘투 등을 통해 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조사 계통은 “후생노동성- 민간사업자- 도도부현- (사업소등) 보고서”임.
- 조사 주기는 매년.
- 조사 실시 기일은 5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이나, 조사 일정이 빠듯한 것이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후술).

<도표 5>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종업원규모별 추출율

산업	규모	99-30인	29인 미만
	전 산업		1/2

출처: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票記入要領」p2에서 작성.

○ 조사 예산

-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1년당 약 3천만엔임.
- 예산의 대부분은 위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비임.
- 위탁사항은, 조사표 및 조사요령의 인쇄, 조사대상 사업소등의 발송, 조사표 기입 후 노동국까지의 반송, 조사표의 예러 체크, 조사표 기재 사항의 전자 데이터화, 조사표의 집계(단, 2016년부터의 위탁사항임, 일부 항목에 한함).
- 위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

○ 조사사항

- 크게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짐.
- 사업소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3. 노동조합의 유무.
-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당해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금액 (추정액), 8. 당해년 6월분의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수당 (각 추정액), 9.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 당해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 * 참고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조사표를 <부표 2>에 게재함.

○ 중요한 용어의 정의

- 노동자에 관한 사항 중 ‘취업형태’는 ‘일반(노동자)’과 ‘파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파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일 소정노동시간 혹은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당해 사업소의 일반적인 소정노동시간 혹은 소정노동일수보다 적은 노동자. 단,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당해 사업소의 일반적인 소정노동일수보다 적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1일의 소정노동시간이 일반적인 소정노동시간보다 긴 사람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자 등)은 일반노동자에 포함한다.”
- ‘기본금액 (추정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노동자가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하지 않고 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본금액. 단, 일급이나 시간급의 경우는 1개월치의 합계가 아니라, 일액 단가 혹은 시간액 단가를 기입할 것.”
- ‘기본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 능력, 직무 등 노동자 본인 혹은 종사하는 직무에 따른 요소에 의거해 결정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기본적 부분을 차지하고, 적용노동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 단,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일 혹은 시간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의 일액 혹은 시간액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해야만 하는 일액 단가 혹은 시간급 단가를 기입할 것. 그리고 피스웍(능력급)의 경우는 보통 능력로 소정노동시간 일한 경우 받는 임금액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기입할 것.”
- ‘기타 수당’은 예를 들어 직책수당, 자격수당, 영업수당, 주택수당 등을 포함함. 반면, 다음은 포함하지 않음. (A)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별로 지급되는 임금, (B)시간외 수당, 조출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숙직/일직수당 등.

다.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입각한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¹⁴⁾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에 기입된,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금액 (추정액)”에 “당해년 6월분의 기타 수당 (추정액)”을 더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액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에 기입된 금액 중 당해년 6월분의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각 추정액)의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위 세가지 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수는 줄게 되나, 사업소에 대해 당해 노동자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 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미만을, 영향율 산출은 회수한 표본수를 토대로 함.
 - 표본의 추출율은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혹은 “경제센서스 기초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별,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 각각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추출율대로 표본이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음. 데이터의 복원은 회수한 표본수에 의거함.
 - 회수 표본수를 모집단으로 나눈 비율의 ‘역수’를 복원배율로 함. 즉, 복원배율 = 모집단 수 / 회수 표본수.
- 도도부현별 데이터 복원
 - 상기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수치에 의거해 미만을, 영향율을 산출함.
 - 도도부현별로 추출한 표본이 다르고 회수 표본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미만을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도도부현별로 상이하게 됨.

14)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전국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영향율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미만율, 영향율 산출상의 특기사항

- 도도부현별로 산출된 미만율 및 영향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원후의 해당 노동자의 숫자에 의거해 각 지역별 랭크 및 전국의 미만율, 영향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미만율 및 영향율 산출방식에 있어서의 도도부현별 회수율의 상이가 미치는 바이어스는 컨트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임금분포 작성시의 단위 (논금)
 - 전국의 미만율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1엔 단위로 계산됨.
 - 도도부현의 경우에도 1엔 단위로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하는 케이스는 적지 않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하지만 도도부현에 따라서는 5엔 단위로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하는 케이스도 있음. 이 경우에는 5엔 단위의 임금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 이를 1엔 단위의 임금분포로 고친 다음 전체 통계에 통합해 전국 단위의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함.

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의해 미만을 및 영향율을 산출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개요¹⁵⁾

○ 조사의 목적

- 통계법이 정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주요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노동자의 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년수 별로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임.

○ 조사의 근거법령

- 통계법에 의한 기간 통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규칙”에 의거해 실시하는 조사임.

○ 조사의 연혁

- 임금구조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1948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온 임금구조에 관한 일련의 조사 계열에 속함.

○ 조사대상

- 조사 범위는 전국 (단, 일부 도서는 제외).
- 산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6대 산업. 즉,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우편업, 도매업·소매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물품대여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오락업(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교육·학습지원업, 의료·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그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단, 외국공무를 제외)
- 사업소는 5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민영사업소 (5-9인 규모의 사업소에 있어서는 기업규모가 5-9인인 경우에 한함) 및 10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영사업소.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 별로 일정한 방법에 의거해 추출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함.

15) 이하는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의함 (http://www.mhlw.go.jp/toukei/list/chinginkouzou_b.html).

○ 표본 추출 방법

- 모집단: 16대 산업의 상용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소. 2014년의 경우, 전국의 132만개 사업소, 약 4,012만명의 노동자.
- 샘플 프레임: 2014년의 경우, 민영사업소에 관해서는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공영사업소에 관해서는 “헤이세이21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헤이세이21년은 서력 2009년임-필자), 노동자에 관해서는 추출된 사업소의 노동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에 의거함.
- 2015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보고서 말미의 <부표 5>를 참고할 것). 이를 모집단으로 해 이하의 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임.
- 추출 방법: (A) 사업소를 제1차추출단위, 노동자를 제2차추출단위로 하는 층화이단(層化二段)추출법. (B) 사업소의 층화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실시. (C) 목표 정도(精度)는 상용노동자의 1인평균 소정내급여액에 관해서 설정. 조사결과의 활용 중요도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표장(表章)산업 및 사업소규모별 표준오차율을 5% 이내로 설정함.

○ 표본 추출율

- 사업소추출율은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 노동자추출율은 100인 이상 사업소의 경우는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10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는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 노동자추출시 노동자를 “정사원/정직원”, “정사원/정직원 이외”, “임시노동자”의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로 무작위추출.
- 상용노동자 (정사원/정직원 및 정사원/정직원 이외)의 표본 추출율은, 우선 사업소규모 499인 이하의 경우는 <도표 6>과 같이 기본적으로 29인 이하는 전수 조사, 30-99인은 2분의 1, 그리고 100-499인은 5분의 1로 규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는, <도표 7>, <도표 8> 및 <도표 9>와 같이 산업별로 추출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임시노동자의 추출율은 <도표 10>와 같음. 상용노동자수가 5-9인 사업소의 경우는 추출율 1분의 1. 즉 임시노동자 전원에 대해 기입함을 원칙으로 함. 상용노동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소의 경우는 추출율 2분의 1, 즉 임시노동자의 절반에 대해 기입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시노동자의 추출 노동자수는 최대 250인까지로 한정함.

- 2014년의 경우, 추출한 사업소수는 약 7만8천 사업소, 추출한 노동자수는 약 170만명.

<도표 6>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499인 이하의 경우)

산업	규모	100-499인	30-99인	10-29인	5-9인
	전산업 (단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을 제외함)		1/5	1/2	1/1 (전수)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1/4	1/2	1/1 (전수)	1/1 (전수)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18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7>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광업, 건설업, 제조업)

산업	규모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1/90		1/20	1/10
건설업			1/60	1/30	1/25
식품제조업			1/40	1/20	1/20
음료·담배·사료제조업			1/40	1/20	1/20
섬유공업			1/60	1/15	1/15
목재·목제품제조업 (가구를 제외)			1/20	1/20	1/15
가구·장비제품제조업			1/20	1/20	1/15
펄프·종이·종이가공제품제조업			1/30	1/25	1/10
인쇄·동(同)관련업			1/30	1/15	1/10
화학공업,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1/40	1/30	1/20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별지 게재를 제외)			1/30	1/15	1/15
고무제품제조업			1/30	1/20	1/15
피혁·동(同)제품·모피제조업			1/20	1/20	1/15
요업·토석제품제조업			1/40	1/20	1/15
철강업			1/60	1/35	1/20
비철금속제조업			1/30	1/20	1/15
금속제품제조업			1/40	1/20	1/20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을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산업	규모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범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제조업			1/60	1/35	1/25
전자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유송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기타제조업			1/30	1/15	1/15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18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8>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도매업 및 소매업 등)

산업	규모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전기업			1/80	1/40
가스업, 열공급업			1/30	1/15	1/10
수도업			1/35	1/35	1/15
통신업, 방송업			1/70	1/40	1/15
정보서비스업, 인터넷부수서비스업			1/80	1/40	1/15
영상·음성·문자정보제작업			1/40	1/15	1/15
철도업	1/90		1/40	1/35	1/15
도로여객수송업			1/40	1/40	1/20
도로화물수송업			1/60	1/40	1/20
수운업, 항공운수업			1/30	1/15	1/15
창고업			1/40	1/20	1/15
운수에 부대하는 서비스업			1/40	1/20	1/20
우편업 (신서(信書)편사업을 포함)			1/70	1/40	1/15

산업	규모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각종상품도매업			1/40	1/20
섬유·의복등도매업			1/40	1/15	1/15
음식료품도매업			1/40	1/25	1/15
건축재료, 광물·금속재료등도매업			1/40	1/20	1/15
기계기구도매업			1/40	1/25	1/15
기타도매업			1/40	1/25	1/15
각종상품소매업			1/60	1/35	1/10
직물·의복·소품소매업			1/80	1/40	1/20
음식료품소매업			1/80	1/30	1/20
기계기구소매업			1/80	1/40	1/20
기타소매업, 무점포소매업			1/80	1/40	1/20
은행업			1/80	1/40	1/20
협동조직금융업			1/30	1/25	1/15
대금업, 신용카드업등 비예금신용기관			1/80	1/20	1/15
금융상품거래업, 금융선물거래업			1/20	1/15	1/10
보조적금융업등			1/80	1/20	1/15
보험업 (보험매개대리업, 보험서비스업을 포함)			1/80	1/35	1/20
부동산거래업			1/30	1/30	1/10
부동산임대업·관리업			1/30	1/30	1/10
물품임대업			1/30	1/30	1/10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19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9>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숙박업 및 음식서비스업 등)

산업	규모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학술·개발연구기관	1/90	1/70	1/40	1/20
전문서비스업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기술서비스업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1/40	1/30	1/25
광고업		1/20	1/20	1/15
숙박업		1/20	1/20	1/10
음식점		1/30	1/30	1/15
테이크아웃·배달음식서비스업		1/80	1/30	1/20
세탁·이용·미용·목욕탕업		1/40	1/40	1/10
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1/80	1/40	1/15
오락업		1/40	1/15	1/15
학교교육		1/60	1/15	1/15
기타 교육, 학습지원업		1/60	1/30	1/25
의료업		1/60	1/25	1/15
보건위생, 사회보험·사회복지·개호사업		1/40	1/20	1/10
우편국		1/80	1/40	1/25
협동조합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1/80	1/15	1/15
폐기물처리업		1/80	1/40	1/25
자동차정비업		1/30	1/30	1/10
기계등수리업 (별지 게재를 제외)		1/30	1/30	1/25
직업소개·노동자파견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1/60	1/25	1/25
정치·경제·문화단체, 종교, 기타서비스업		1/70	1/40	1/20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20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10> 임시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산업	규모	10인 이상	5-9인
	전 산업		1/2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20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주요한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사업소의 고용형태별 노동자수, 기업전체의 상용노동자수, 신규확졸자의 초임금액 및 채용 인원 (단 민영사업소에 한함).
- 노동자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번호 혹은 성명, 성(性), 고용형태, 취업형태(단 상용노동자에 한함), 최종학력, 연령, 근속년수, 노동자의 종류(단 제조업 등의 상용 1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직위 (단 상용 10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직종, 경험년수, 실노동일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 초과 실노동시간수,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초과노동급여액, 통근수당 및 정개근수당과 가족수당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¹⁶⁾, 조사전년 1년간의 상여금 및 기말수당등의 특별급여액.
- * 참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표 사업소표”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표 개인표”를 <부표 3> 및 <부표 4>에 게재함.

○ 조사시기

- 조사 실시는 7월1일에서 7월31일까지.
- 노동자의 고용형태/취업형태 등은 조사년의 6월 30일 현재, 노동자의 급여액 등은 조사년의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의 1개월분을 조사.
- 상여금, 기말수당등 특별급여액에 관해서는 조사전년의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금액을 조사.

○ 조사방법

- 조사 실시계통은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통계조사원- (사업소등) 보고자”임.

16)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기준감독서의 직원 또는 통계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대상 기업소가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함.

○ 조사표 기입방식

- 자계식

○ 집계 및 추계 방법

- 집계는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에 위탁.

- 추계는 기본적으로 추출율의 역수, 즉 복원배율에 의함¹⁷⁾

○ 조사결과

- 인터넷에 공표

○ 조사예산

- 미상

○ 중요한 용어의 정의

- ‘상용노동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A)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노동자, (B)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 (C) 일일 혹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 중 조사년의 4월 및 5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된 노동자.

- ‘임시노동자’: 상기 상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

- ‘고용형태’: 크게 상용노동자 및 임시노동자로 구분. 상용노동자는 다시 (A)“정사원/정직원”과 “정사원/정직원 이외” 및 (B)“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노동자”와 “고용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로 구분함. 상용/임시 및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인 구분은 <도표 11>과 같음.

- ‘취업형태’: 상용노동자를 ‘일반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로 구분. 일반 노동자는 “단시간노동자 이외의 노동자”. 단시간노동자는 “1일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보다 짧거나, 1일의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와 같더라도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일반노동자보다 적은 노동자”를 말함.

-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노동계약, 노동협약 혹은 사업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6월분으로 지급된 현금급여액. 실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 현금급여액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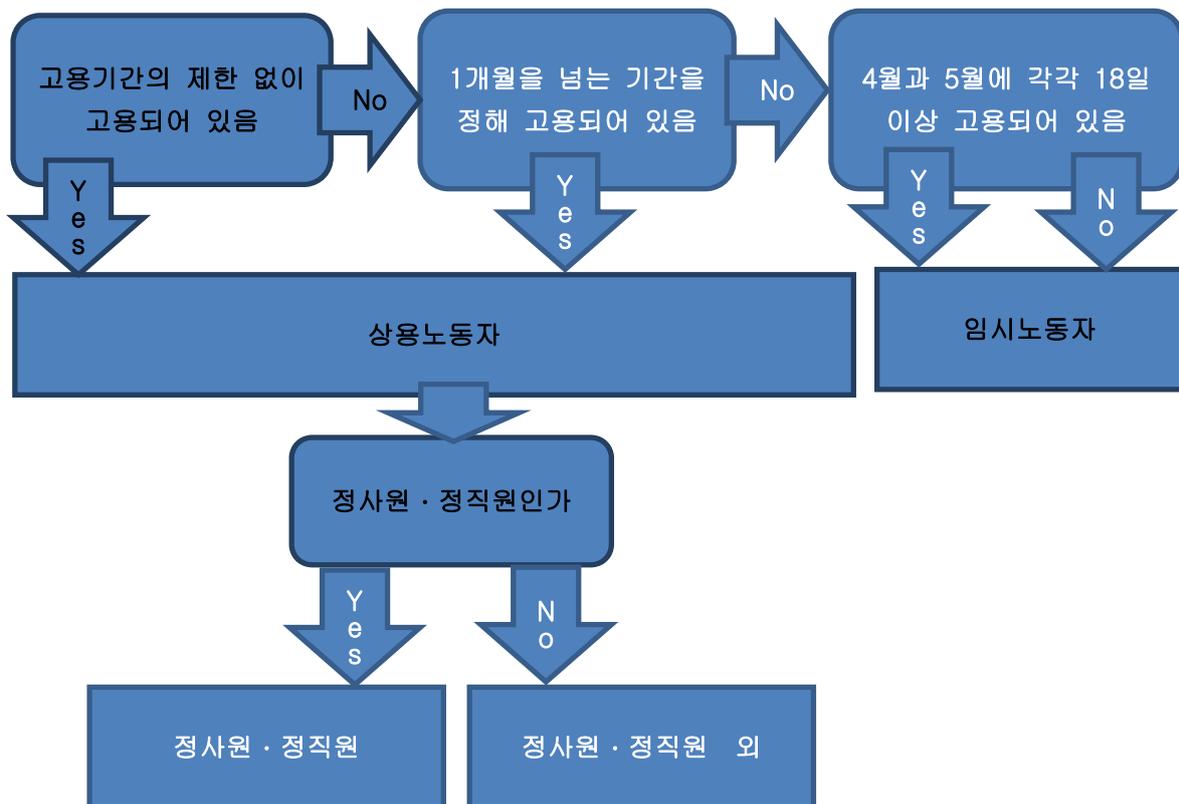
17) 추계방법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관련 페이지를 참조.

(http://www.mhlw.go.jp/toukei/list/dl/chingin_zenkoku_b-2.pdf)

가족수당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급여액도 포함됨. 산정 단위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인 급여항목의 경우 6월에 지급된 것은 포함됨. 또한 지불이 체연되더라도 6월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포함됨. 다만 급여개정 (임금인상 등)에 따른 5월분이전에 대한 추급액은 포함되지 않음.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의 1시간당 액수”: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을 실노동시간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와 초과 실노동시간수의 합계)로 나눈 것.
- ‘소정내급여액’: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에서 초과노동 급여액을 뺀 액수.

<도표 11> 노동자의 구분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 p4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입각한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¹⁸⁾

□ 특별집계의 대상 항목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통상적으로 집계, 발표하는 항목 외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액을 특별히 집계.
-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노동자의 임금 항목을 ‘1엔 단위’로 특별히 집계.
- 다만 상용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즉, 임시노동자는 특별집계 대상에서 제외함.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관한 조사표 개인표”에 기입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중에서 다음의 제수당액, 즉, 초과노동급여액,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모두 제외한 금액.
-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초과노동급여액은 물론이고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수는 줄게 되나, 사업소에 대해 당해 노동자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 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컨트롤된다고 할 수 있음.

□ 미만을,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우선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즉 복원배율은 추출율의 역수임.
- (본래의 통계에서 임시노동자를 제외하고) 복원한 결과, 미만을, 영향율 산출의 레퍼런스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약 3천만명으로 됨.

18) 주15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 복원에 있어서 사업소규모별 혹은 임금계급별로 특별한 조작 (예를 들어 5-9인 규모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최저임금 주변의 임금계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을 가하는 일은 없음. 본래의 추출율 및 복원배율을 그대로 사용함.

□ 미만을, 영향율의 산식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을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을, 영향율의 산식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을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을, 영향율의 산식 (전국의 경우)

- 미만을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 영향율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바.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에 의한 미만의 산출¹⁹⁾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개요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최저임금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最低賃金の履行確保に関する監督指導結果」) 혹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주안점을 둔 감독지도 결과”(「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를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있음.

19)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 이는 후생노동성이 규정하는 “업무통계”의 일환이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년 도도부현 노동국이 작성하는 “감독년보(年報)” 중의 해당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산하 노동기준감독서(署)는 매년 연간감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노동감독을 실시하는데, 이 때 과거 위반율이 높았던 곳이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곳을 중점적인 타겟으로 설정해 노동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작성해 보고하는 것임.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지도 결과를 취합해 후생노동성이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함.
 - 단, 각 도도부현 노동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단순 집계한 의미를 넘지 못함.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이 타겟으로 설정하는 산업이나 사업소규모가 다르고, 또 도도부현에 따라 노동감독이 실시되는 강도와 실효성도 다르기 때문에, 감독지도 결과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에 의한 미만의 측정

- 상기 감독지도 결과 중 하나로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 및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이 있음.
-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의 측정
 - “위반율”의 산식: $\text{위반율} = \frac{\{\text{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 사업장 수}\}}{\{\text{감독실시 사업장 수 합계}\}}$
 - 2015년 현재 상기 위반율은 11.6%임. 사업장 수 비율이므로 높게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측정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산식: $\text{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frac{\{\text{감독실시 사업장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text{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 수 합계}\}}$
 - 2015년 현재 상기 비율은 3.3%임.
 - 근래의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면 <도표 12>와 같음.
 -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당해 비율 또한 점차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음.

- 문제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미만을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

<도표 12>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추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상황			
년	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수 (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 (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2006	149,523	2,376	1.6
2007	299,402	4,241	1.4
2008	310,782	4,081	1.3
2009	150,126	3,393	2.3
2010	192,080	3,482	1.8
2011	201,362	5,275	2.6
2012	185,260	4,056	2.2
2013	190,386	4,079	2.1
2014	182,548	5,716	3.1
2015	161,377	5,262	3.3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 15日.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051328.pdf>).

본래는,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 (平成17年度 ~ 平成26年度) .

3. 지방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사이타마현의 사례²⁰⁾

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사무국이 제공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²¹⁾

- 상기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참고로 제출되었던 통계 자료 및 배포자료 외에 사이타마현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관동(關東)경제권)에 관한 자료를 배포 (2012년의 경우)
 - 자료1: “전국 재무국 관내경제정세보고개요”
 - 자료2: “2012년도 제2회 전국 재무국장회의석상 배포자료”
 - 자료3: “지역경제보고”
- 사이타마현에 관한 자료 (2012년의 경우)
 - “사이타마현 주요경제지표”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 춘투 임금인상요구 타결상황”
 - “2012년 춘투 임금인상의 각 기관별 집계상황 (가중평균)”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도 임금인상상황”
 - “최근의 최저생활비의 년도별 변화 (생활보호법 기준에 의함)”
 - “생활보호와 최저임금의 비교에 관해 (2010년도, 사이타마현)”
 - “사이타마지역 노동정세의 상황”
 - “(사이타마현내)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2012년 1월-3월)”
 - “최저임금액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의 추이”. 이는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주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임.
 - “법인기업 경기에측조사 (2012년 4-6월기 조사) 사이타마 분(分)”

20)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016년 4월에 이루어진 인터뷰 기록에 의거함. 다만,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심의회의 의사록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된 데이터는 2012년 인터뷰에 의거해 작성한 기존의 메모 및 당시 입수한 자료 등을 활용함. 이들 자료는 수치는 이전 것이나, 데이터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충분히 유용함. 한편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2012년의 인터뷰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우중원(2012)을 참조했음.

21) 전계 우중원(2012) pp. 95-97.

- “사이타마현의 기업도산상황”
- “기업경영동향조사 (2012년 4월 실시) 조사결과”
- “사이타마현내 기업경영동향조사 (2012년 4-6월기)”
- “2012년도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실태조사결과”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건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 “최저임금 영향율 (사이타마현)”

○ 상기 “최저임금액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의 추이”에 의하면, 2012년도 현재 상위 3번째까지의 이유와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 비율은 다음과 같음²²⁾.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를 몰랐다”: 사업소비율 34.8%
- “최저임금이 개정된 것은 알았지만 이에 맞춰 임금을 개정하지 않았다”: 사업소비율 16.7%
-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 사업소비율 13.6%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사무국이 제공하는 산업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²³⁾

○ 사이타마현의 경우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중분류 혹은 소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의 업종에 대해 산업별 최저임금이 설정되고 있음

- 비철금속제조업
-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전기기계기구,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광학기계기구·렌즈, 시계·동(同)부분품제조업
- 각종부품소매업
- 자동차소매업

○ 이들 산업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공됨 (2012년의 경우).

-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22) 埼玉県労働局 「最低賃金額以上を支払っていなかった理由の推移」各年度.

본래 자료는 埼玉県労働局 「地域別最低賃金違反事業場に対する調査結果」各年度.

23) 전계 우종원(2012) pp. 97-98.

- “전국 특정최저임금 일람 (관계 6업종)”
- “최저임금개정에 수반되는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 상기 “임금개정 상황조사”(賃金改定状況調査)의 ‘제 1표’에서 ‘제4표②’까지
- “소정내급여 (산업별, 규모별)의 동향”
- “소정내노동시간 (산업별, 규모별)의 동향”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 하기상여금 요구 타결상황 최종집계”
- “관동(關東)지역 광공업생산활동 (2012년 6월 속보)”
- “관내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 “기업도산상황”
- “사이타마현 사반기 경영동향조사(2012년 4-6월)”
- “사이타마시, 전국, 도쿄의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물가지수동향”
- “사이타마지역 노동정세의 상황”
- “2012년도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실태조사결과”
상기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건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를 특정최저임금의 여섯개 업종별로 집계
- “임금특성치 일람 (사이타마현)”

나. 지방단위의 미만을 및 영향율의 측정

□ 최저임금과 관련한 독자적인 조사

-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무국 기능을 통괄하는 사이타마노동국 노동기준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활용하는 조사는 상기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실시
 -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소수는 약 7,400개임.
 - 2014년에는 이 중 약 5천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했음.
 - 2015년도의 경우,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약 3,500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함.
 - 산업별로 몇 개의 사업소를 추출할지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정해 시달하는 지침에 따름. (이 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산업별로 추출된 사업소의 종업원 규모별 추출율은 전계 <도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음.
- 2015년도의 경우, 이 중 약 1,300개 사업소로부터 조사표를 회수.
- 회수율이 높지 않으나, 이는 현 내에 소규모사업소와 가족경영사업소가 많이 모여있어, 이들 사업소의 회답 비율이 낮은 때문으로 여겨짐.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한 미만을 및 영향율의 산출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미만을 및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미만을 및 영향율의 산식은 위에서 설명한 전국 단위의 방식과 다름 없음.
- 산업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만을 및 영향율을 산출함. 즉, 업종별로 회수한 표본수를 토대로 정해진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후,
 - 당해 업종의 현행 최저임금 미만자수를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로 나누어 미만을을 산출함.
 - 당해 업종의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만자수를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로 나누어 영향율을 산출함.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됨 (2012년의 경우임)²⁴⁾
 -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건표” (<도표 13>): 1엔 단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한 자료. 최저임금 바로 근처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모여 있어 이 부근의 영향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 때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영향율”도 제시됨 (<도표 14>): 경향적으로 1-29인 규모와 30-99인 규모의 영향율이 많이 달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소 가운데서도 1-9인과 10-29인과는 특히 최저임금 주변에서 영향율의 차이가 많이 나, 사업소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동시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영향율”도 제시됨 (<도표 15>) : 최저임금의 영향율은 같은 현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별 영향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24) 2011년 시행되어 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759엔임.

-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도표 16>): 최저임금의 미만을과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님. 현행 최저임금의 차상위 계급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도표 17>) : 전체 누적 분포의 “제1·20분위”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을 통한 빈곤 해소 및 격차 축소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상기 자료와 관련이 깊은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특성치” 및 “지역별 특성치”도 동시에 제시됨 (<도표 18> 및 <도표 19>) : 임금 분포에 있어 사업소규모별,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냄.
- “최저임금개정에 수반되는 미만을 및 영향율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 특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여섯개 사업분야별로 집계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건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도표 13>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건표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영향율
	액 (엔)	인상율 (%)	
759	0	0.00	2.44
760	1	0.13	3.49
761	2	0.26	5.55
762	3	0.40	5.55
763	4	0.53	5.56
764	5	0.66	5.57
765	6	0.79	5.58
766	7	0.92	5.64
767	8	1.05	5.65
768	9	1.19	5.69
769	10	1.32	5.70
770	11	1.45	5.78
771	12	1.58	6.36
772	13	1.71	6.40
773	14	1.84	6.40
774	15	1.98	6.43
775	16	2.11	6.46
776	17	2.24	6.54
777	18	2.37	6.55
778	19	2.50	6.55
779	20	2.64	6.63
780	21	2.77	6.65
781	22	2.90	7.37
782	23	3.03	7.41
783	24	3.16	7.41
784	25	3.29	7.42
785	26	3.43	7.43
786	27	3.56	7.47
787	28	3.69	7.47
788	29	3.82	7.52
789	30	3.95	7.53
790	31	4.08	7.54
791	32	4.22	7.95
792	33	4.35	7.96
793	34	4.48	7.99
794	35	4.61	8.00
795	36	4.74	8.02
796	37	4.87	8.09
797	38	5.01	8.10
798	39	5.14	8.13
799	40	5.27	8.16
800	41	5.40	8.19
801	42	5.53	14.86
802	43	5.67	14.86
803	44	5.80	14.87
804	45	5.93	14.89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 「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 (平成24年度) 의 결과임.

<도표 14>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영향을

時間額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24 年度	1~9人	4.13	4.31	5.84	7.54	8.62	9.42	9.98	15.86	16.56	17.65	19.02
	10~29人	1.16	1.32	3.21	6.16	6.98	8.00	8.79	16.89	17.79	19.25	20.59
	30~99人	0.10	0.17	0.48	1.42	2.18	2.70	3.04	7.87	8.48	9.89	11.67
	1~99人	1.80	1.95	3.49	5.78	6.65	7.54	8.19	15.16	15.95	17.31	18.72
23 年度	1~9人	3.43	3.67	6.59	7.50	8.42	9.49	9.81	17.12	18.56	19.88	21.41
	10~29人	0.43	0.47	2.06	2.48	2.79	4.39	4.84	8.49	9.32	10.98	13.02
	30~99人	0.17	0.20	2.35	2.45	3.99	6.35	7.20	9.13	10.07	12.20	13.16
	1~99人	1.11	1.20	3.22	3.70	4.38	5.99	6.49	10.72	11.71	13.38	15.09
22 年度	1~9人	5.82	7.04	9.97	10.78	11.44	12.44	12.81	18.01	18.90	19.42	20.96
	10~29人	2.96	3.14	4.76	5.32	6.02	7.13	7.52	12.68	13.66	14.57	16.56
	30~99人	0.34	0.49	1.36	1.50	1.74	2.61	2.65	4.50	5.11	5.76	6.65
	1~99人	3.29	3.69	5.55	6.12	6.77	7.83	8.18	13.00	13.94	14.15	15.87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 「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 (平成24年度) 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도표 15>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지역별 영향을

時間額		740	750	760	770	780	790	800	810	820	830	840
24 年度	南部	1.81	1.95	3.57	5.94	6.74	7.44	7.87	14.47	15.01	16.27	17.54
	北部	1.78	1.95	3.23	5.27	6.39	7.84	9.14	17.23	18.82	20.44	22.32
	全県	1.80	1.95	3.49	5.78	6.65	7.54	8.19	15.16	15.95	17.31	18.72
23 年度	南部	1.04	1.12	2.41	2.78	3.54	4.64	5.22	9.34	10.38	12.13	14.02
	北部	1.36	1.48	5.89	6.72	7.15	10.45	10.65	15.25	16.11	17.48	18.64
	全県	1.11	1.20	3.22	3.70	4.38	5.99	6.49	10.72	11.71	13.38	15.09
22 年度	南部	3.07	3.49	4.79	5.39	5.99	6.53	6.72	11.24	12.21	12.60	14.39
	北部	3.90	4.19	7.98	8.38	9.19	12.09	13.24	18.99	25.99	19.76	21.18
	全県	3.29	3.69	5.55	6.12	6.77	7.83	8.18	13.00	13.94	14.15	1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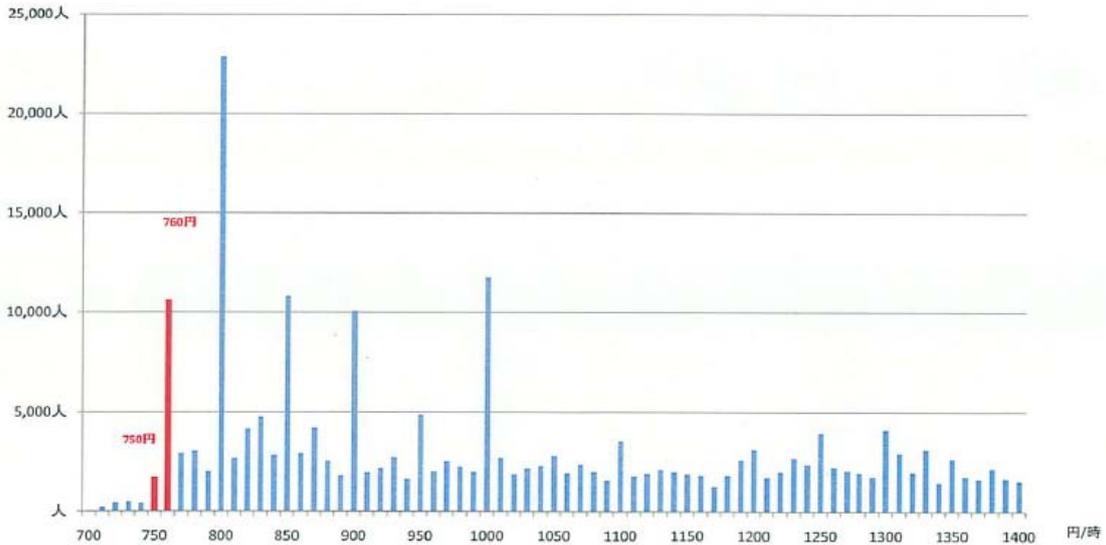
北部は、熊谷・行田・加須・羽生・深谷・本川・秩父市、児玉・大里・北埼玉郡・東秩父村を除く秩父郡、南部は北部を除いた地域である.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 「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 (平成24年度) 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도표 16>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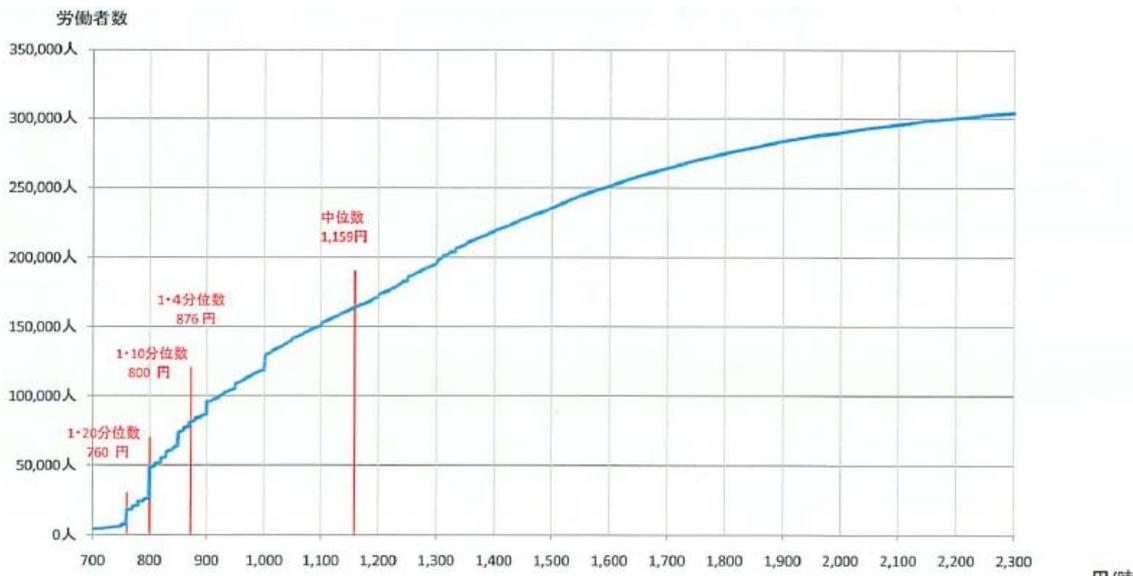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24年度)의 결과임.

주: 2011년 시행되어 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759엔임. 따라서 그래프 속에서도 '750엔'과 '760엔' 대의 막대가 붉게 표시되어 있음.

<도표 17>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24年度)의 결과임.

주: 그래프의 왼쪽부터 '제 1·20분위 수', '제 1·10분위 수', '제 1·4분위 수', 그리고 '중위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도표 18>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특성치

		第1・20分位	第1・10分位	第1・4分位	中位数
24 年 度	1~9人	750	800	870	1,114
	10~29人	760	800	859	1,131
	30~99人	800	830	970	1,263
	1~99人	760	800	876	1,159
23 年 度	1~9人	750	800	850	1,076
	10~29人	800	820	929	1,250
	30~99人	780	815	950	1,283
	1~99人	780	800	900	1,222
22 年 度	1~9人	734	760	856	1,128
	10~29人	761	804	879	1,233
	30~99人	818	866	951	1,335
	1~99人	751	803	900	1,209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24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도표 19>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지역별 특성치

		第1・20分位	第1・10分位	第1・4分位	中位数
24 年 度	南部	760	800	900	1,188
	北部	760	800	850	1,100
	全県	760	800	876	1,159
23 年 度	南部	795	814	900	1,229
	北部	750	780	900	1,200
	全県	780	800	900	1,222
22 年 度	南部	760	806	903	1,251
	北部	750	780	818	1,220
	全県	751	803	900	1,209

北部は、熊谷・行田・加須・羽生・深谷・本庄・秩父市、児玉・大里・北埼玉郡・東秩父村
を除く秩父郡、南部は北部を除いた地域である。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會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24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사이타마노동국 관할 내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 결과에 토대한, 사이타마현의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가 제시됨.
- 감독지도 결과의 하나인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 및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측정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음.
 - “위반율”의 산식: $\text{위반율} = \{\text{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 사업장 수}\} / \{\text{감독실시 사업장 수 합계}\}$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산식: $\text{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text{감독실시 사업장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 \{\text{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 수 합계}\}$

4.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을 및 영향율의 상이²⁵⁾

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상이

□ 두 조사간의 이동(異同)

○ 크게 보아 두 조사에 있어 미만율은 크게 다르지 않음

- 전계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

○ 하지만 영향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계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

□ 상이의 원인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분포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은 위에, 두 조사의 표본 성격이 다른 것이 영향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분포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분포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상위/차차상위 계급에 집중되는 분포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사이타마현의 임금분포는 <도표 20>에서 보듯, 최저임금 785엔의 바로 위 쪽인 800-900엔 대에 집중되어 있음.

-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 오사카부와 같은 경우는 <도표 21>에서 보듯 최저임금 819엔에 바로 인접한 임금대에 임금분포의 피크가 위치하고 있음.

○ 두 조사간 표본의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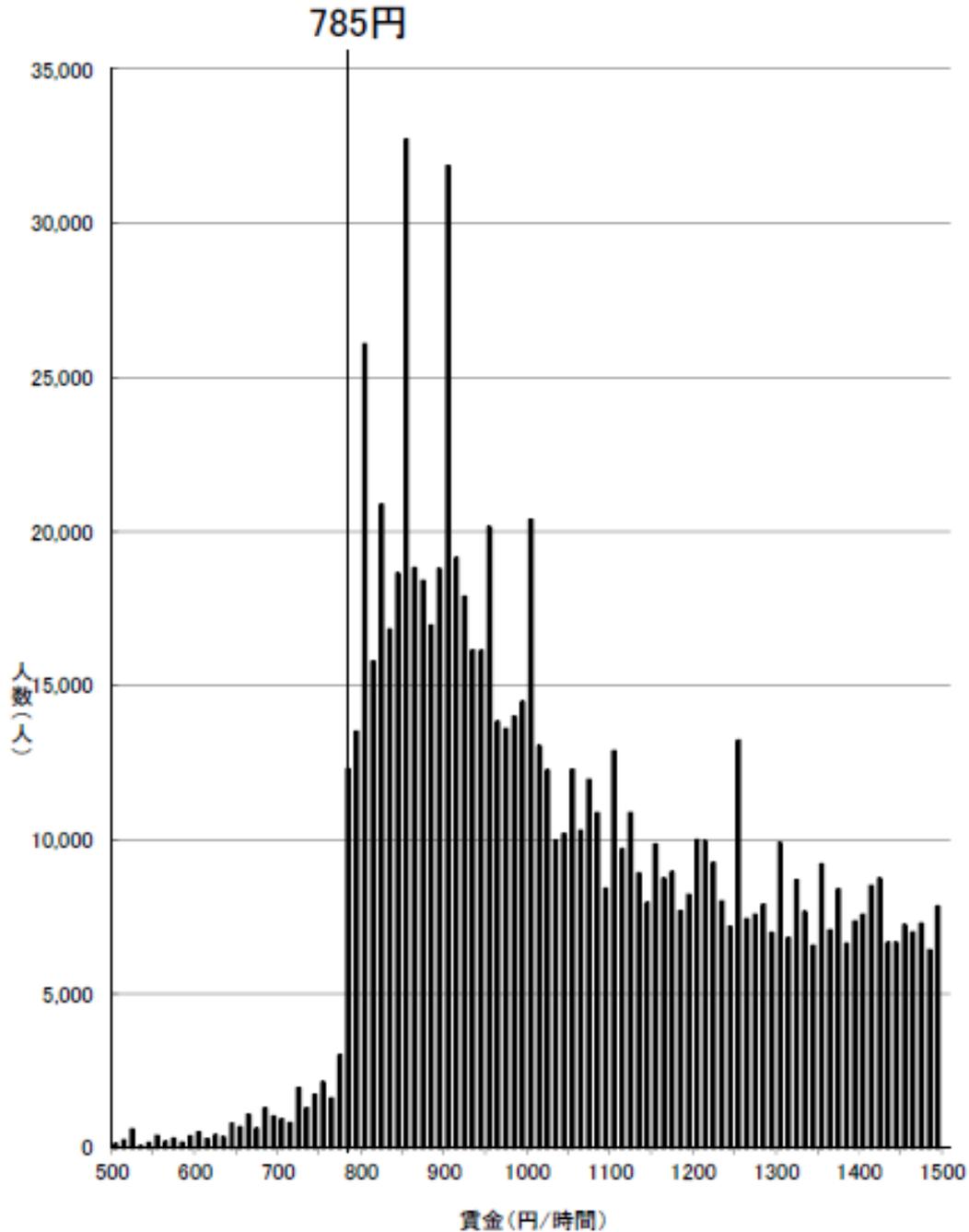
-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대를 경계로 심하게 단층이 진 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두 조사간의 표본의 상이가 영향율의 차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될 가능성이 큼.

25) 이하는 주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의거해 고찰한 것임.

- 이에 비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주로 저임금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를 다수 포함함. 결과, 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임금분포곡선보다 더 경사진 형태로 최저임금 차상위 계급 혹은 차차상위 계급에 많은 수가 집중하는 임금분포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미만율은 비슷하게 산출되지만, 영향율의 경우는, 특히 전 해에 비교해 당해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한 영향율은 높지 않은 반면, 최저임금의 차상위/차차상위 계급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영향율은 높게 나오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

<도표 20> 사이타마현의 임금분포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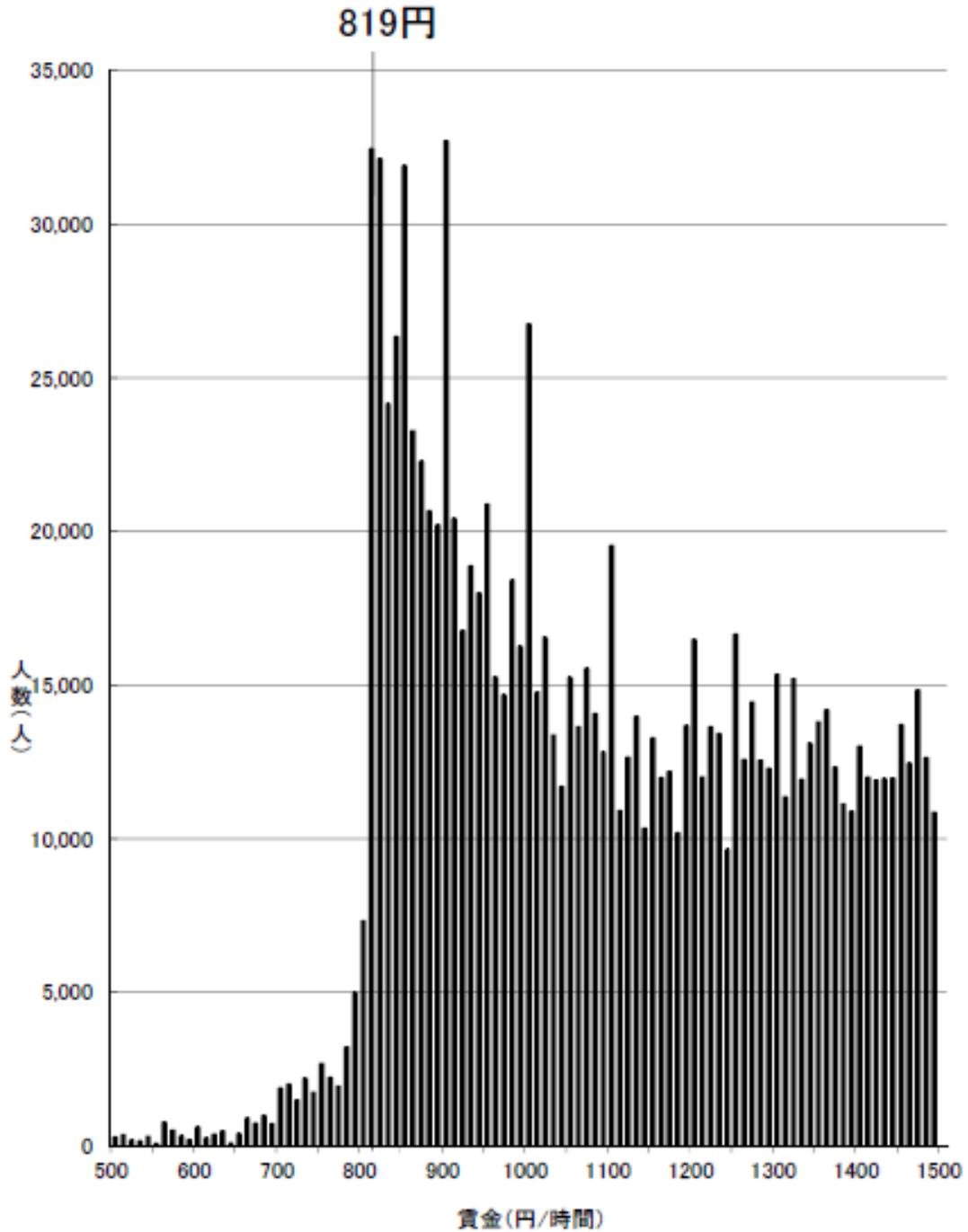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2015年7月15日のうち「資料No.4 賃金分布に関する資料」. 본래는, 厚生労働省「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의 결과임.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kenseisakuka/0000091656.pdf>)

주: 2014년 10월에 발효된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785엔임 (그래프 속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표기된 곳).

<도표 21> 오사카부의 임금분포 (2015년)



출처: 厚生労働省 「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 (第2回) 資料」

2015年7月15日のうち「資料No.4 賃金分布に関する資料」.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의 결과임.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091656.pdf>)

주: 2014년 10월에 발효된 오사카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819엔임 (그래프 속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표기된 곳).

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상이

□ 두 조사간의 이동(異同)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을 (전계 <도표 1>)과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미만을 (상기 <도표 12>)을 비교하면, 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상이의 원인

- 첫째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가 무작위조사임에 반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작위적’인 조사이기 때문임. 즉 후자의 조사는 (A)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이나 사업소, (B)현재 미만을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소를 타겟으로 실시되는 조사임. 따라서 후자의 미만을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생함.
- 둘째, 조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임.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해당하는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보통은 12월경)에 실시되는 조사에 의한 것임. 이에 반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휘한 다음 해의 6월, 그것도 보통은 기업 단위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임. 따라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5. 미만율 및 영향을 측정을 둘러싼 과제 및 시사점

가. 미만율 및 영향을 측정을 둘러싼 과제²⁶⁾

□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 미만율 및 영향을 측정의 토대가 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수가 다수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과제

- 본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가 여타 산업은 30인 미만으로 하되, 제조업 및 신문업, 출판업의 경우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함임. 관계자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는 도도부현별로 산업별 최저임금(‘특정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종별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30인 미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면 샘플 수가 적어져서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함.
-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현재 방식으로 충분한 수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관계자에 의하면, 업종별의 미만율과 영향을 데이터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출되지만, 샘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이 과연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예를 들어 몇 엔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그에 의한 영향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때는 사무국으로부터도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정확을 기하기가 힘들다)”라는 부연설명이 제시된다고 함.
- 실제로 사이타마현의 사례에서는 2015년도에 약 3,500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하고 이 중 약 1,300개 사업소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했음. 이들 중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지 않는 부문을 일단 제외한 후,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는 6개의 업종별로 각각 어느 정도의 샘플이 얻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업종에 따라서는 두자리 숫자 이하의 샘플밖에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이에 의거해 산출한 미만율/영향율의 신뢰성이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소매업 등 여타 업종의 경우에는 현행 방식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관계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제조업 외에서는 신문업, 출판업에 한정해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신문업, 출판업’이 중시된 것은 이들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난 시절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비해 ‘자동차소매업’과

26) 이하는 주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의거해 고찰한 것임.

같은 소매업 혹은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한편으로 이들 업종에서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부문의 데이터를 보다 정확히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음

- 하지만 통계 자체는 다른 성청 (총무성 통계국)의 소관사항이고, 통계실시의 변경 절차도 간단치 않아, 상기의 과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임.
- 표본수를 늘이는 경우 예산 등의 관련 조치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당연한 과제로 됨.
- 한편,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도 ‘30인 미만’의 현행 방식으로 문제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함.

□ 조사 및 분석 시간의 확보

○ 미만을 및 영향을 측정의 토대가 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조사실시 시간과 분석 시간이 매우 빠듯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임

- 최저임금의 개정 스케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즉, ‘춘투’ 등을 감안한 위에 6월 1일 현재의 임금개정상황을 전제로, 7월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랭크별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액을 심의해, 10월초까지는 이를 공표해야 함.
- 이런 스케줄에 맞추어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6월을 중심으로 한 달 정도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조사/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음

- 관계자에 의하면 상기 문제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5월에 조사표를 배부해, “6월 1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는 예상 아래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함.
-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이 힘든 사정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및 자원의 집중적인 투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적절한 복원율의 확립

○ 미만을 및 영향을 측정의 참조 지표가 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경우, 복원율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경우,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 문제는 표본의 추출율과 표본의 회수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된 추출율에 따라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관계자에 의하면, 회수율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복원방법의 실현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고 함.

나. 일본의 미만율 및 영향을 측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기입하는 방식에 의거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있어서도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됨. 그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예를 들어 상기 조사통계를 조세나 사회보험과 관련한 다른 조사통계와 비교해서 그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등)는 또 다른 정책적인 과제임.
-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에 의거하는 미만율/영향을 측정은, 조사사항 (예를 들어 급여액 혹은 노동시간 등) 에 대한 노동자의 개별적인 인식상의 편차 및 이로 인한 기입상의 편차를 줄이고, 통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 적정 수의 표본 확보가 과제

- 앞에서 특히 산업별최저임금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종별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사이타마현의 경우, 예를 들어 현안이 되고 있는 자동차소매업의 샘플 수를 늘이기 위해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 제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샘플 수의 확대는 쉽지 않음.
- 샘플 수를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해 업종에 관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자체의 표본 수를 늘이는 외에, “임금개정상황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 회수된 당해 업종의 (30인 미만 혹은 100인 미만 사업소의) 조사표를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런 ‘전용’은 각각의 조사의 본래 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함부로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라의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취득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음.
-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용’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사를 통합하고 이를 매개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정책적인 의미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는 적정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자원의 추가적인 배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상분석 및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현행 조사로는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의 설정 자체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주변의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임금, 소득 및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최저임금 주변에 모여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나, 조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예를 들어 노동자의 학력은 묻지 않고 있음) 또한 샘플 수가 적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노동자에 관한 조사사항이 다기에 걸쳐 있고 또한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유리함. 실제로 일본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논할 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이 몰려 있다고 여겨지는 5인 미만 사업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탓에, 저임금노동자를 망라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5인 미만 사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영세 사업소의 경우는 종업원관리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다기에 걸친 노동자 관련 조사사항을 기입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표본 수는 적다고 할지라도, 영세 사업소를 포함해서 일정한 표본 수를 확보한 위에 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
-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음.

[참고문헌]

- 安部由起子・田中藍子 (2007) 「正規-パート賃金格差と地域別最低賃金の役割 1990年~001年」 『日本労働研究雑誌』 No. 568. pp 77-92.
- 川口大司・森悠子(2009)
「最低賃金労働者の属性と最低賃金引き上げの雇用への影響」 『日本労働研究雑誌』 No. 593, pp 41-54.
- 神吉知郁子 (2011) 『最低賃金と最低生活保障の法規制』 信山社.
- 大橋勇雄 (2009) 「日本の最低賃金制度について-欧米の実態と議論を踏まえて-」 『日本労働研究雑誌』 No. 593, pp 4-15.
- 大竹文雄 (2013) 「最低賃金と貧困対策」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2-J-014.
- 労働調査会出版局編 (2016a) 『改訂3版 最低賃金法の詳解』 労働調査会.
- 労働調査会出版局編 (2016b) 『平成24年版 最低賃金決定要覧』 労働調査会.
- 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5) 『(労働政策研究報告書No.44) 日本における最低賃金の経済分析』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9) 『(資料シリーズNo.62)最低賃金制度に関する研究-低賃金労働者の状況-』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労玉田桂子・森知晴 (2013) 「最低賃金の決定過程と生活保護基準の検証」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3-J-013.
- 吉村臨兵 (2010) 「セーフティネットとしての最低賃金」 埋橋孝文・連合総研編 『参加と連帯のセーフティネット』 ミネルヴァ書房.
- 우중원(2012)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정진호 외 『영국·일본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최저임금위원회. pp. 46-110.

<부표 2>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

統計法に基づく一般統計調査

厚生労働省 (秘)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票

(平成 25 年 6 月)

政府統計

この調査票に記入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統計以外の目的に使ったり、他に漏らし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記入上の注意)

- ※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平成25年6月1日現在(ただし、2の(8)~(9)については実績ではなく、平成25年6月分の見込み)の状況を記入してください。
- 記入にあたっては、黒又は青のボールペンを使って、□(太線)の中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 数字は、1, 2, 3, ……の算用数字を使ってください。
- 数字は、1, 2, 3, ……の算用数字を①のように○で囲んでください。
- で囲む場合は、いずれか1つの数字を①のように○で囲んでください。

(注1) 労働者には以下の者を除きます。ただし、ロ又はハの若くは、一般の労働者と同一ように勤務し、同じ給与規則によって給与を受けている場合は労働者に含めます。

イ. 専業主、社長 ロ. 理事、取締役などの役員 ハ. 家族従業員

(注2) 2の(8)については、例えば土曜日など1日の所定労働時間の半分だけ働く場合は0.5日と数えてください。

(注3) 2の(9)については、例えば7時間15分は7.3、7時間30分は7.5、7時間45分は7.8と小数点を用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統計法に基づく一般統計調査

調査票番号: []

調査区分番号: []

事業所番号: []

市区町内番号: []

普通所番号: []

連絡先 TEL: []

主要な生産品の名称又は事業の内容(5項よりは概略上のものをいいます): []

記入担当者: []

1. 事業所に関する事項 (注)

(1) 事業所の労働者数(注1)(臨時、パートを含む)平成25年6月1日現在	男	女	計
	人	人	人

(2) 事業所における労働組合の有無

あり	なし
1	2

2. 労働者に関する事項

(1) (1)の労働者全員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ただし、労働者数が30人以上の事業所では、労働者名簿などから、特定の職種等の労働者にかたよらないように、1人おきに選んで、記入してください。

連番	労働者番号	性別	就業形態	年齢		勤続年数		職種又は仕事の内容	6月の基本給額	6月分の諸手当(月額)				月間所定労働日数(注1)	1日の所定労働時間(注2)	業務処理欄																																																																																							
				男	女	現	在			30日31日6月1日現在	6月1日現在	(9)	(10)				(11)	(12)	(注1)	(注2)																																																																																			
1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3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4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5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6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7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8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0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注) 2 枚目以降については、「1. 事業所に関する事項」欄は記入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출처: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票」
 (http://www.mhlw.go.jp/toukei/list/97-1.html).

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률 및 영향률 추정과 한국에의 시사

1) 平成24年經濟センサス-活動調査による集計表 (都道府県、産業、常雇規模別事業所数及び労働者数表)

産業	1-9人			1-4人			5-9人			臨時		
	事業所	雇用者	常雇	臨時	事業所	雇用者	常雇	臨時	事業所		雇用者	常雇
T-GH	91,243	343,783	304,300	39,483	66,308	167,752	26,380	24,935	176,011	162,928	13,083	
E	6,172	25,810	22,759	3,051	4,092	10,833	1,854	2,080	14,977	13,760	1,217	
I	34,656	131,678	121,429	10,249	24,456	62,202	54,654	10,198	69,476	66,575	2,901	
I-56.591	32,954	125,541	115,473	10,068	23,250	59,388	52,185	9,704	66,153	63,288	2,865	
L	5,111	16,485	15,553	932	3,984	8,860	8,225	1,127	7,625	7,328	297	
M	17,023	65,487	53,670	11,797	12,771	34,897	25,920	4,252	30,570	27,750	2,820	
N	9,751	30,050	25,655	4,395	8,170	17,924	15,465	1,581	12,126	10,190	1,936	
P	8,322	38,501	34,874	3,627	4,905	14,093	12,249	3,417	24,408	22,625	1,783	
P-831	8,308	38,428	34,804	3,624	4,898	14,077	12,235	3,410	24,351	22,569	1,782	
R	10,208	35,772	30,360	5,412	7,928	16,943	15,660	2,280	16,829	14,700	2,129	
R-89	8,298	29,135	23,958	5,177	6,559	15,853	12,732	3,121	13,282	11,226	2,056	
E09	1,312	6,941	5,431	1,510	762	2,612	1,743	869	4,320	3,688	641	
E10	200	966	787	179	125	412	289	123	75	554	498	56
E11	235	974	837	137	161	435	339	74	539	498	41	
E12	318	1,422	1,299	123	201	553	481	72	117	869	51	
E13	480	1,478	1,379	99	353	784	706	107	706	673	21	
E14	51	194	170	24	39	105	83	22	89	87	2	
E15	530	1,868	1,760	108	379	880	795	65	1,008	965	43	
E16	114	506	458	48	70	155	155	44	330	303	27	
E17	102	311	305	6	75	141	136	5	27	170	169	1
E18	119	499	467	32	74	174	163	11	325	304	21	
E19	24	106	98	8	15	40	37	9	66	61	5	
E20	15	60	59	1	10	26	26	5	34	33	1	
E21	482	2,271	2,054	482	270	766	681	85	212	1,505	1,373	132
E22	93	371	348	23	62	154	135	19	31	217	213	4
E23	23	87	87	-	14	31	31	-	9	56	56	-
E24	785	2,992	2,793	199	516	1,269	1,141	128	249	1,723	1,652	71
E25	166	631	577	54	114	293	268	35	338	319	19	
E26	246	1,004	954	50	157	391	361	89	613	593	20	
E27	49	201	182	19	35	98	83	15	103	99	4	
E28	13	58	49	9	9	25	24	1	4	25	25	8
E29	104	349	326	23	81	195	176	19	23	154	150	4
E30	9	49	42	7	6	20	17	3	3	29	25	4
E31	163	631	582	49	112	281	243	38	51	350	339	11
E32	430	1,311	1,215	96	349	758	684	74	81	553	531	22
EEZ	149	530	500	30	103	234	212	22	46	296	288	8
I50	50	166	161	5	37	82	76	4	13	84	83	1
I51	385	1,337	1,277	60	271	578	547	31	114	759	730	29
I52	2,041	8,297	7,152	1,145	1,422	3,712	3,119	593	619	4,585	4,033	552
I53	2,486	9,255	8,974	281	1,710	4,074	3,901	173	776	5,181	5,073	108
I54	2,809	10,585	10,385	200	1,894	4,588	4,433	156	915	5,997	5,952	45
I55	2,340	8,826	8,206	620	1,681	4,363	3,856	507	659	4,463	4,350	113
I56	25	101	87	14	16	33	29	4	9	68	58	10
I57	3,859	14,218	13,415	803	2,791	7,351	6,749	602	1,068	6,867	6,666	201
I58	5,975	23,744	20,459	3,285	4,279	11,439	8,938	2,501	1,696	12,305	11,521	784

都道府県、産業、常雇規模別事業所数及び労働者数表(平成24年経済センサス-活動調査による集計表 1)

産業	10-29人				30-99人				100人以上			
	事業所	雇用者	常雇	臨時	事業所	雇用者	常雇	臨時	事業所	雇用者	常雇	臨時
T-GH	20,194	341,072	324,203	16,869	6,074	314,658	304,187	10,471	1,486	341,066	330,445	10,623
E	2,265	40,677	38,744	1,933	1,016	52,625	51,167	1,458	276	63,840	62,738	1,102
I	8,021	125,930	123,047	2,883	1,796	92,130	90,521	1,609	352	64,275	63,480	795
I-56.591	7,248	114,009	111,186	2,823	1,703	88,177	86,573	1,604	292	47,451	46,711	740
L	630	10,138	9,820	318	168	8,355	8,163	192	36	6,612	6,609	3
M	3,394	57,010	54,853	2,147	719	33,856	32,704	1,152	90	20,625	18,304	2,321
N	1,238	23,334	20,761	2,573	365	18,213	17,125	1,088	42	10,792	9,718	1,074
P	3,072	54,518	51,389	3,129	1,264	68,694	66,100	2,594	405	97,647	95,820	1,827
P-831	3,064	54,370	51,252	3,118	1,105	57,301	55,131	2,170	93	14,811	14,429	382
R	1,574	29,465	25,579	3,886	746	40,785	38,407	2,378	285	73,776	73,776	3,501
R-89	1,321	25,666	21,814	3,852	717	39,512	37,143	2,369	285	77,277	73,776	3,501
E09	819	15,494	14,455	1,039	525	28,059	27,002	1,057	158	33,423	32,464	959
E10	70	1,246	1,186	60	26	1,406	1,391	15	4	521	513	8
E11	71	1,223	1,179	44	23	1,164	1,163	1	2	533	533	-
E12	178	3,110	3,012	98	39	1,994	1,974	20	6	743	742	1
E13	76	1,331	1,305	26	19	785	781	4	4	255	255	-
E14	42	770	749	21	36	2,069	1,977	92	16	3,456	3,420	36
E15	132	2,354	2,238	116	53	2,437	2,364	73	8	1,938	1,919	19
E16	50	902	871	31	24	771	1,195	29	5	1,087	1,069	18
E17	7	122	122	-	-	-	-	-	3	646	646	-
E18	74	1,371	1,321	50	35	1,578	1,513	65	5	961	961	-
E19	9	158	157	1	5	261	261	-	1	162	162	-
E20	6	136	125	11	2	89	89	-	1	131	125	6
E21	155	2,642	2,499	143	26	1,349	1,336	13	2	251	251	-
E22	35	599	591	8	23	1,296	1,274	22	12	3,945	3,944	1
E23	9	166	166	-	4	233	233	-	1	145	145	-
E24	233	3,878	3,789	89	53	2,461	2,439	22	9	1,637	1,633	4
E25	31	529	520	9	15	701	697	4	1	603	603	-
E26	87	1,539	1,498	41	29	1,514	1,500	14	4	605	565	40
E27	16	271	266	5	5	182	182	-	-	-	-	-
E28	17	347	307	40	12	729	729	-	17	4,186	4,186	-
E29	30	481	478	3	18	992	988	4	4	1,227	1,227	-
E30	3	55	54	1	4	179	179	-	3	977	977	-
E31	47	831	779	52	18	956	939	17	11	5,982	5,982	10
E32	34	545	516	29	9	434	430	4	2	416	416	-
EEZ	34	577	561	16	13	533	531	2	-	-	-	-
I50	17	240	239	1	4	139	139	-	-	-	-	-
I51	62	964	948	16	22	893	878	15	4	951	926	25
I52	583	10,028	9,714	314	175	8,658	8,515	143	23	6,436	6,414	22
I53	475	7,278	7,213	65	78	3,477	3,453	24	4	565	565	-
I54	548	8,548	8,481	67	114	5,437	5,362	75	11	1,571	1,571	-
I55	511	8,123	7,981	142	108	5,335	5,272	63	19	3,889	3,719	170
I56	7	93	82	11	5	284	284	-	59	16,717	16,662	55
I57	322	4,739	4,597	152	45	2,007	1,975	32	5	1,428	1,412	16
I58	2,623	41,444	40,087	1,357	561	32,191	31,529	662	149	20,887	20,792	95

출처: 厚生労働省 労働基準局 임금시간실 제국 자료. 원래는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결과.
 (http://www.stat.go.jp/data/e-census/2012/kakuho/gaiyo.htm)